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공사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상호 협력·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제휴의 범위) 센터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해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1.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홍보협력
2.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3.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서민 주택금융지원제도 교육 지원
4. 그 밖에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세부 협약체결 및 실무협의회 개최) 이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제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 업무담당자간 세부협약체결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단,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실무협의회 구성 : 양 기관 담당 부서장, 팀장, 기타 관계자
2. 운영

가. 원칙 : 비상설·비정기적 협의체로 운영

나. 예외 : 주요 협의사항 도출시 양 기관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한정하여 정례적으로 운영

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 담당자의 합의를 통해 결정

제4조(제휴확대) 센터와 공사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휴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지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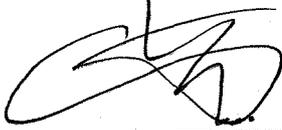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양 기관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협약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원장 심 성 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 성 수

